

의안번호	2202460
의 퇴 인	김태년의원
회 답 일	2024.08.16.
추 계 번호	24A25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5조의21(사업)	○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1항) － 산업단지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1)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제11호의4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사업)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세 사유

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 추가(안 제45조의 21제1항제11호의4 후단 신설)

-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집적해 있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

(단위: 개, 천㎡)

단지명	지정면적	개소수	관리면적
국가산업단지	790,294	51	484,276
일반산업단지	574,436	732	564,905
도시첨단산업단지	11,871	46	11,847
농공산업단지	78,389	483	77,893
합계	1,454,990	1,312	1,138,92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현황조사 24년 1분기”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²⁾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및 저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총 21개)하고,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관련하여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³⁾ 사업 예산으로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840억원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
 3.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4.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확충이 필요할 것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6.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 3) (법적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1
(사업 목적)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재생 분산에너지원

(2024년) 규모로 출연금⁴⁾을 지원중임

- 2024년 현재 10개⁵⁾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서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중이며, 2027년까지 15개(누적)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RE100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단지 수출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탄소국경세 대응 등을 지원할 계획임

[표 2]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세부사업)	43,000	61,400	109,500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	20,000	38,000	84,000

주 1.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의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6131-303)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임

2.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에서 발췌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나, 추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이 추진될 산업단지의 추가 지정 등으로 인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이 확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출연금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추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이 추진될 산업단지의 개수, 지원 단가 등에 따라 확대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이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참고자료]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개요

을 구축하고 에너지 수요-공급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기업의 RE100 인증 지원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5) 21개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창원('20~), 반월시화('21~), 구미('22~), 부산·여수·청주·광주·군산·대구·인천('23~) 10개의 산업단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지수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50	zisu37@nabo.go.kr

[참고자료]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개요⁶⁾

□ 사업개요

- 산업단지에 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분산자원, 잉여 에너지 변환시설의 통합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사업내용

- (에너지인프라) 산단 입주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 분산에너지원과 친환경에너지 활용 인프라* 구축
 - * 연료전지, 태양광, ESS, V2G(Vehicle To Grid) 등
- (산단에너지관리) 발전소의 에너지 공급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수요 데이터 통합관리 및 서비스 제공
- (RE100 지원) RE100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과 에너지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RE100 인증* 지원
 - * 글로벌 자동차 업체(폭스바겐 등)에서 거래기업의 탄소배출 현황을 요구하는 등 탄소중립이 수출대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직결되고 있음

[표 1]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개념도(창원)



6)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에서 발췌

<추진성과(창원)>

- 에너지자급자족형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남창원 그린에너지센터 구축 → 센터에는 연료전지 1.8MW, 태양광 0.2MW(센터외부 2.6MW), ESS 3MWh, V2G(충전 94kW, 방전 74kW) 등 그린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급('22.12월 완공)
- (창원산단) 경남창원 그린에너지센터 착공식 개최



□ 향후계획

- 현재 창원('20~), 반월·시화('21~), 구미('22~) 3개 스마트그린산단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
- 2023년 7개 스마트그린산단에 신규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가속화 지원(2027년까지 15개 산단으로 확대(누적))
- '스마트에너지플랫폼'과 연계해 에너지 공급·소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에너지거래 등에 활용해 산단의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표 2] 연도별 사업계획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추진 과제	▶ 에너지인프라 시스템 설계 ▶ RE100 지원서비스 플랫폼 설계	▶ 신재생에너지인프라 부지 확보 및 설계·착공 ▶ RE100 지원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참여기업 모집	▶ 신재생에너지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연계 ▶ RE100 지원서비스 플랫폼 시범운영

□ 기대효과

- 산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RE100 인증을 지원해 산단 입주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